조기입학·입학연기 신청 ◎ [학부모]

아동의 보호자는 입학 적령기 1년 전후로 자녀의 발육상태 등 개인차에 따라 입학 시기를 선택하여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할 읍 · 면 · 동을 방문하여 신청

※ 입학연기 신청은 보호자와 아동이 함께 대면 방문 신청

입학기일 및 통학구역 설정 ◎ [교육장]

교육장은 매년 다음 해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고, 11월 30일까지 읍 · 면 · 동장에게 통보

취학통지 ◎ [읍·면·동장]

읍 · 면 · 동장은 입학할 학교를 지정하고, 입학기일을 명시하여 12월 20일까지 취학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 통지(학교장에게도 통보)

※ 국 · 사립 초등학교장은 신입생 모집공고, 원서접수, 추첨 등을 거쳐 신학년도 입학 허가자를 결정하고 입학허가자명부를 12월 10일까지 읍 · 면 · 동장에게 통보

취학통지서 발급

- 온라인 취학통지서
  - 발급 사이트 : 정부24 (https://www.gov.kr)
  - 발급 기간(안) : 2026. 12. 3.(목)~12. 20.(일), 18일간 예정
  - 발급 내용 : 취학통지서 열람 · 발급(출력 및 PDF 저장)
  - 발급 대상 : 아동과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학부모
- 우편 · 인편 취학통지서
  - 발급 기간(안) : 2026. 12. 10.(목)~12. 20.(일), 11일간 예정
  - 현행과 같이 별도의 신청 없이 관할 읍 · 면 · 동에서 우편, 인편 안내
  -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유무와 상관없이 병행 통지 실시 예정

예비소집 ◎ [학교장]

- 예비소집 진행 :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입학 준비 및 학교 소개 등 안내
- 아동소재 · 안전 확인 : 대면을 원칙으로 실시하며, 부득이한 경우 개별 내교 또는 추가 소집일 운영
- 탄력운영 : 예비소집일 기간 · 시간 연장, 접수 장소 · 시간 분산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

※ 장기 해외 휴가 등 부득이한 경우,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하되 아동의 소재 · 안전 확인을 위해 가급적 지양

※ 취학통지서 지참하여 보호자와 아동이 함께 대면 참석

취학의무의 유예

취학을 1년 미루고자 할 경우

입학연기 신청기일(2026. 12. 31.) 이후 질병 · 발육부진 등의 사유로 취학의무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2027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해당 취학학교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초등학교 취학유예 신청서 작성)



예비소집 관련 문의

- 남부교육지원청(미추홀구, 제물포구, 영종구, 옹진군) (032)627-1212
- 북부교육지원청(부평구, 계양구) (032)510-1598
- 동부교육지원청(남동구, 연수구) (032)460-6146
- 서부교육지원청(서해구, 검단구) (032)560-6683
- 강화교육지원청(강화군) (032) 930-7725

인천광역시교육청 INCHEO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 본 자료는 초등학교 입학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를 안내하는 자료로서 예비 학부모는 물론 1학년 신입생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제작하였습니다.

읽걷쓰AI로 학생성공시대 완성

2027년도 초등학교 입학(취학) 절차 안내



인천광역시교육청 INCHEO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2027학년도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설렘 가득한 초등학교 입학!
초등학교의 입학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

2027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의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아동이 입학 대상자입니다.

- 초등학교 입학 대상자는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6세에 도달한 아동을 말하며, 그다음 해인 2027년 3월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 취학의무 유예자 등 전년도 미취학 아동도 포함되며, 2026학년도에 조기입학으로 이미 취학 중인 아동은 제외됩니다.



취학 업무 절차

취학아동명부 작성 ◎ [읍·면·동장]

- 읍 · 면 · 동장은 10월 1일 현재 관내에 거주하는 아동 중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를 조사하여 10월 31일까지 취학아동명부를 작성
- 읍 · 면 · 동장은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한 후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아동의 보호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 10월 1일(취학아동명부 작성 기준일) 이후에도 취학 대상 아동이 관내로 전입하는 경우 즉시 취학아동명부에 등재